#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 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 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 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된 경우		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발성과를 위조・변조・표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15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위를 한 경우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15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 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 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한과제도 문규된 연구개월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의 100분의 250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를 말한다) 전액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		를 말한다) 전액
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		
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행을 포기한 경우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경우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원 이하인 경우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
이하인 경우	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 나.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된 경우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발성과를 위조・변조・표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3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위를 한 경우 의 3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의 100분의 20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의 100분의 20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의 100분의 50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의 100분의 20

	1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2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		의 20	
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	
		의 20	
	1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경우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원 이하인 경우	
	!

-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 이하인 경우
-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 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